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321호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제정하는 데
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」

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·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
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(법률 제19847호, 2023.12.26. 공포, 2024.4.27. 시행)
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, 행위허가 신고,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, 총괄
사업관리자 신청, 비용지원 신청,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
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
정함(안 제4조).

라.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
(안 제5조).

마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용자를 지원
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(안 제6조).

바. 특별정비구역 지정·변경·해제, 사업시행자·총괄사업관리자 지정, 선도지
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
(안 제7조)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
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
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5-3 6층 국토교통부 도
시정비기획준비단

- 전자우편 : tryjyk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910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(전화 044-201-4927, 팩스 044-201-591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